

#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5. 9.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8월 2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9월 2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의결(9.8~9.9)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 가. 제안이유

-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예산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금년도 세입 증가 예상분 및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경정조치한 예산을 주 재원으로 하여
-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분 및 일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동에 대한 최소한의 추경 예산을 편성

### 나. 주요골자

-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기정예산액	간주처리액	추경 예산 (안)	증감율 (%)
합 계	252,392,259	233,335,672	11,692,486	7,364,101	3.2%
일반회계	211,302,482	194,000,000	10,549,086	6,753,396	3.5
특별회계	41,089,777	39,335,672	1,143,400	610,705	1.6
의료급여	73,311	61,311	12,000	0	
주민소득	1,466,511	1,466,511	0	0	
주차장	39,549,955	37,907,850	1,131,400	610,705	

다. 주요사업내용

○ 법적·의무적 경비	-----	2,097,600천원
○ 국·시비 보조금 의무 부담비	-----	660,000천원
○ 지방 이양 사업비	-----	422,800천원
○ 주요 시책사업	-----	2,029,420천원
○ 기타 주요사업	-----	2,562,810천원
○ 국·시비 반납금	-----	733,359천원
○ 분권교부세 및 국·시비 경정	-----	△533,824천원
○ 구비 감 조정	-----	△1,218,769천원
○ 특별회계 (반납금 및 인건비등)	-----	610,705천원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전문위원 : 김찬재)

○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을 볼때 지방세 및 보조금 수입의 감소를 일시적세외 수입으로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추경액은 6,753,396천원으로 이중 41.9%인 2,830,959천원은 인건비, 선거관리경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국·시비반납금 등의 법적·의무적경비이고

○ 주요 시책사업인 음식물폐기물처리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등의 추경예산액은 30.0%인 2,029,420천원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추경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610,705천원으로 인건비 177,763천원, 경상적경비 79,221천원, 반환금 353,72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이를 볼때 2005. 1차 세출 추경예산은 세입의 대폭 변동으로 법적·의무적경비의 비중이 높고 사업예산의 비중이 낮음.

○ 본 추경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총 664,29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 이외에는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조정규모 총괄

- 세입·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가경정예산액	조 정 액		수 정 예 산 액	비 고
		증	감		
총 계	252,392,259	237,890	237,890	252,392,259	
일반회계	211,302,482	237,890	237,890	211,302,482	
특별회계	41,089,777	-	-	41,089,777	

## 나. 심사조정내역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세세항	목	조 정 액		조 정 내 역
		중	감	
자 체 사 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	사무실 재배치 공사 60,000,000원 중 30,000,000원 삭감
경상적 경 비	일 반 운영비		11,590	수첩 및 신청서 제작 21,590,000원 중 11,590,000원 삭감
경상적 경 비	일 반 운영비		15,400	인증배지 및 우수자원봉사단체공로장 제작비 19,900,000원 중 15,400,000원 삭감
경상적 경 비	일 반 운영비		140,900	푸드마켓 설치 471,800,000원 중 140,900,000원 삭감
경상적 경 비	일 반 운영비		5,000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8,000,000원 중 5,000,000원 삭감
자 체 사 업	자 산 취득비		35,000	사회복지협의회 집기구입 35,000,000원 전액 삭감
자 체 사 업	연구개발비	20,000		의사운영,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구의회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비목 설치하고 20,000,000원 증액
자 체 사 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000		구민회관 전기용량(분전반) 증설 20,000,000원 증액
자 체 사 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		주민자치센터운영,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영동포3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 실 보수 비목 설치하고 30,000,000원 증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8,000		보건의료사업 전문도서 구입비 8,000,000원 증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000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 설치 12,000,000원 증액
자 체 사 업	민간이전	20,000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헬스장비 구입 20,000,000원 증액
자 체 사 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		생활복지, 복지시설확충, 자체사업,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에 신길7동, 대림2동 구립경로 당 시설비 비목설치하고 10,000,000원 증액
자 체 사 업	재료비	6,000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 자체사업, 재료비에 꽃모 구입 비목 설치하고 6,000,000원 증액
예비비	예비비	111,890		삭감 차액 계상 111,890,000원 증액
합 계		237,890	237,890	

□ 기타부분은 구청제출 원안대로 의결

## 5. 審査結果 : 수정안 가결

## 2005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75
----------	-----

제출연월일 : 2005.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사유

-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예산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금년도 세입 증가 예상분 및 기편성된 예산중 성과가 미흡한 사업중 경정조치한 예산을 주 재원으로 하여
-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분 및 일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등에 대한 최소한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 요청함.

### 2.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추가경정예산액	간주처리액	추경예산 (안)	증감율 (%)	비고
합 계	252,392,259	233,335,672	11,692,486	7,364,101	3.2%	
일반회계	211,302,482	194,000,000	10,549,086	6,753,396	3.5	
특별회계	41,089,777	39,335,672	1,143,400	610,705	1.6	
의료급여	73,311	61,311	12,000	0		
주민소득	1,466,511	1,466,511	0	0		
주차장	39,549,955	37,907,850	1,131,400	610,705		

### 3. 주요사업 내용

- |                     |       |              |
|---------------------|-------|--------------|
| ○ 법적·의무적 경비         | ----- | 2,097,600천원  |
| ○ 국·시비 보조금 의무 부담비   | ----- | 660,000천원    |
| ○ 지방 이양 사업비         | ----- | 422,800천원    |
| ○ 주요 시책사업           | ----- | 2,029,420천원  |
| ○ 기타 주요사업           | ----- | 2,562,810천원  |
| ○ 국·시비 반납금          | ----- | 733,359천원    |
| ○ 분권교부세 및 국·시비 경정   | ----- | △533,824천원   |
| ○ 구비 감 조정           | ----- | △1,218,769천원 |
| ○ 특별회계 (반납금 및 인건비등) | ----- | 610,705천원    |

# 영등포구주거환경개선등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179
----------	-----

발의년월일 : 2005. 9. 12

발의자 : 김동철 의원의 인

## 1. 주 문

○ 영등포구 주거불량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 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개발로 품격 있고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 2. 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에서는 제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을 선정 발표하였음.

○ 금번에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동 지역은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이룰 수 있어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지역보다 더 낙후되거나 비슷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신길2동 일대의 지역이 제외됨으로서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요원하여 상대적인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연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의 불합리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부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영등포구 문래동, 양평동, 신길2동, 도림동, 대림동 일대가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되거나 특별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특단의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영등포구주거환경개선등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문

서울시에서는 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의 새로운 방식인 뉴타운 개발로 품격 있고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뉴타운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에서는 제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을 선정 발표 하였고 금번에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동 지역은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이룰 수 있어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지역보다 더 낙후되거나 비슷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신길2동 일대의 지역이 제외됨으로서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요원하여 상대적인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연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구 문래동, 양평동, 신길2동, 도림동, 대림동 일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준공업지역 조정, 도시계획 완화, 낙후한 도시 이미지 개선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해결대책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금번 뉴타운 후보지·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락한 주거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역적 불균형을 현실성 있게 해소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균형개발 및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하여 41만 영등포구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는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신길2동 일대가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로 탈락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즉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라.
2. 뉴타운·균형발전지구 지정이 어려울 경우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3. 문래동·양평동 일대 준공업지역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4. 서울시는 영등포구와 인접한 양천구, 마포구, 구로구 등과 형평에 맞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5. 문래동, 양평동, 신길2동, 도림동, 대림동 일대는 소규모 민간위주의 개발이 아닌 도시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서울시장은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비전 제시와 함께 각성하라.
7. 서울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도시관리업무 등 권한을 자치구로 상당 부분 이양하라.

2005년 9월 12일